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19
----------	-------

발의연월일 : 2018. 7. 23.

발의자 : 송기현 · 김철민 · 유승희

신경민 · 민홍철 · 유은혜

윤소하 · 김병기 · 신창현

유동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를 제공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는 인력을 활동보조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에게 현행법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으로 인하여 직업에 대한 자존감과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하여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활동보조인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 제27조 및 제28조).

법률 제 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활동보조인이”를 “활동지원사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활동보조인”이라”를 ““활동지원사”라”로,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u>활동보조인</u> 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 2.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 -----. 1. ----- ----- <u>활동지원사가</u> ----- ----- ----- -----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 <u>활동보조인</u> )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 <u>활동보조인</u> ”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u>활동보조인교육기관</u> 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7조( <u>활동지원사</u> ) ① ----- ----- ----- -----“ <u>활동지원사</u> ”라----- ----- ----- <u>활동지원사교육기관</u> ----- ----- ----- ----- -----. ② ----- <u>활동지원사</u> -----
② 제1항에 따른 <u>활동보조인</u> 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 ----- -----

